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I.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기금총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1)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2)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고 있음
-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1억 8,500만원이며, 2017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99억 5,400만원)보다 2.3%, 2억 3,200만원 증가됨

<표 5-11> 2017년도 공제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A)	2017년도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B=A+㉠-㉡)	증 감	
		수입㉠	지출㉡		금액 (C=B-A)	비율 (C/A)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9,954	7,846	7,614	10,185	232	2.3

- 2017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77억 9,900만원으로 2016년도(157억 1,200만원) 대비 13.3%, 20억 8,700만원 증가함

<표 5-12> 2017년도 공제기금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17년	2016년	증 감		항 목	2017년	2016년	증 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7,799	15,712	2,087	13.3	합 계	17,799	15,712	2,087	13.3
전입금	5,672	5,752	△79	△1.4	비용자성 사업비	6,289	8,104	△1,815	△22.4
보조금	1,857	12	1,845	15,375.0	인력운영비	929	814	115	14.1
예치금회수 (잔기입금)	9,954	9,644	310	3.2	기본경비	396	441	△45	△10.2
이자수입	146	140	6	4.3	예치금 (차기입금)	10,185	6,353	3,832	60.3
기타수입	170	164	6	3.7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2. 기금수지현황

(1) 수입계획

- 2017년도 수입계획은 177억 9,900만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 99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공제료 수입, 보조금(지원금), 소방수익, 학교폭력구상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7년도 수입금 78억 4,600만원으로 구성됨

<표 5-13> 2017년도 공제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항목	세부내역	2017년도(A)		2016년도(B)	증 감	
			구성비		금액(C=A-B)	비율(C/B)
계		17,799	100.0	15,712	2,087	13.3
전 입 금	소 계	5,672	31.9	5,752	△80	△1.4
	공제료 수입	5,672	31.9	5,692	△20	△0.4
	교육금고기부금	0	0.0	60	△60	△100.0
보 조 금	소 계	1,857	10.4	12	1,845	15,375.0
	공제급여 지원금	1,672	9.4	0	1,672	순증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8	0.1	12	6	50.0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168	0.9	0	168	순증
예치금 회수	전기 이월금	9,954	55.9	9,644	310	3.2
이자수입	이자수입	146	0.8	140	6	4.3
기타수입	소계	170	1.0	164	6	3.7
	소방수익	120	0.7	120	0	0.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50	0.3	44	6	13.6

- 공제료 수입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³⁾에 따라 학교 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⁴⁾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는 바,
- 2017년도에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공제료 단가는 평균 295원 인상되었으나, 학생수 감소(△55,917명)로 공제료 수입은 2016년 대비 △0.4%, △2,000만원 감소함

<표 5-14> 공제료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연 도	당해연도 수입(A)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B)			학생수 (산출내역 기준)		공제료 단가 평균 (원)	
		전년대비 증감		구성비 (B/A)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2017	7,846	1,778	5,672	72.3	△20	1,053,468	△55,917	5,165	295
2016	6,068	△54	5,692	93.8	247	1,109,385	△17,153	4,870	387
2015	6,122	-	5,445	88.9	-	1,126,538	-	4,483	-

주) 2016~2017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 2015년도는 결산서 기준임

- 공제료 수입이 당해연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제기금의 수입 구조상 학생수의 감소는 공제기금 재정난을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기금 관리·운용주체인 공제회에서는 이자수입, 지원금(기부금) 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지원금 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3건의 지원금을 모두 기금수입에 편성하고 있음

<표 5-15> 교특회계 세출예산 중 공제회 지원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보조금 세부내역	지원근거	교특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세부사업	과목	금액	소관부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	재무회계관리	민간이전	18	교육재정과
공제급여 지원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재무회계관리	민간이전	1,672	교육재정과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조	학생생활지도지원	민간이전	168	정책·안전 기획관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1,800만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⁵⁾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료 지

4)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

구 분	유	초	중	고	평균
2017년도	1,940	3,370	6,840	8,510	5,165
2016년도	1,940	3,160	6,360	8,020	4,870
증감액	0	210	480	490	295
증감율	0	6.6	7.5	6.1	5.1

원금을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공제급여 지원(16억 7,200만원)과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1억 6,800만원)은 2017년 신규 사업인 바,
- 공제급여 지원(16억 7,200만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3조6)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을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1억 6,800만원)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7)에 의하여 교육감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의무화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8)에 의하여 공제회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심의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공제회의 피해자 상담지원과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소방수익은 1억 2,000만원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10)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바,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로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로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2. 생략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다.
-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1~3호 생략)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지출계획

- 2017년도 지출계획은 177억 9,900만원으로 예치금 101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9억 3,000만원), 기본경비(3억 9,600만원) 및 비용자성사업비(62억 8,900만원)로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있음

<표 5-16> 2017년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항목	세부내역	2017년도(A)		2016년도(B)	증 감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계		17,799	100.0	15,712	2,087	13.3	
비용자성사업비	소계	6,289	35.3	8,104	△1,815	△22.4	
	공제사업비	소계	5,793	32.5	7,754	△1,961	△25.3
		공제급여(사고보상비)	5,617	31.6	7,620	△2,003	△26.3
		소송및의료자문	146	0.8	146	0	0.0
		보상심사위원회	30	0.2	0	30	순증
	예방사업비	208	1.2	229	△21	△9.2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7	0.9	0	167	순증	
	학교폭력피해지원	120	0.7	109	11	10.1	
인력운영비	소 계	930	5.2	814	116	14.3	
	급 여	790	4.4	680	110	16.2	
	수 당	140	0.8	134	6	4.5	
기본경비	소 계	396	2.2	441	△45	△10.2	
	업무추진비	30	0.2	30	0	0.0	
	일반운영비	366	2.1	411	△45	△10.9	
예치금	차기 이월금	10,185	57.2	6,353	3,832	60.3	

- 비용자성사업 중 **보상심사위원회**는 2017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16년에 이미 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항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11)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관련 법¹²⁾에 따라 공제사업비로 전환한 것임
- 2016년 대비 순증(1억 6,700만원)된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¹³⁾ 및 같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14)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과 상담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공제회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정관을 개정(15)한 것으로 확인됨

- 공제회가 제출한 지출계획 중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6,500만원)이 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바,
 -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6.9.)」(16)에 따르면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였으므로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은 인력운영비(법정부담금)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10월 대법원은 지병이 있거나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안전법(17) 시행령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 제도가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도입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모범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18)을 한 바,

- 향후 공제급여 지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기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재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회의경비(19), 행사비 등 소모성경비에 대한 자체적인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1~3호 생략)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정관 변경 승인 통보(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2934, 2016. 6.24.)

16)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6.9.)」(p.156)

인력운영경비 : 인건비, 직급보조비, 공무원법정부담금, 기타직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인건비지원을 모두 합한 금액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

18)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사건

19) 지출계획상 공제회 회의경비 1회 단가는 50만원이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p.34)은 회의 시 생수 이외의 의례적인 차, 음료, 간식 등의 제공을 자제하고 있음